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행정과 주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도맡고 있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 혜택을 명문화하고 추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 활동 여건 보장
- 나. 이장 건강검진 지원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1) 「지방자치법 제4조의 2」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81조(이장의 임명)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나. 예산조치: 2021년 당초예산 약 30,000천원 반영 예정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0. 10. 6. ~ 10. 26.(20일간)

- 제출받은 의견: 0건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구역 안에서의 면장”을 “구역 안에서 읍·면장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선도하여야”를 “이끌어야”로 한다.

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이장이 질병·장기간 출타 외 기타사유로 이장으로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시,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, 월정수당과 실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이장의 임무) ① 이장은 리 구역 <u>안에서의 면장</u>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조(복무)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,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<u>선도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4조(실비변상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이장의 임무) ① ----- 구역 안에서 읍·면장의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복무) ① ----- ----- ----- 이끌어야 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실비변상)</p> <p>① ~ 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이장이 질병·장기간 출타 외 기타사유로 이장으로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시,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, 월정수당과 실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

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상해보험가입
3. ~ 9. (생략)

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
3. ~ 9.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

관계법령 발췌

■ 지방자치법

○ 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■ 지방자치법

○ 제81조(이장의 임명)

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이장의 건강검진 및 평창군이장연합회 운영 지원 관련 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관련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연평균 5천만원 이하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과장 최찬섭
연락처	(033) 330 - 2210